

평택 고덕 우미 린 더 프리미어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대상 및 배정세대

가.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c-3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층 8개동 총 623세대
- 공급세대

(단위 : 세대, m²)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총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084.9343A	84A	84.9343	25.2659	110.2002	61.3891	171.5893	309
084.9075B	84B	84.9075	25.6657	110.5732	61.3698	171.9430	61
084.8505D	84D	84.8505	26.2277	111.0782	61.3286	172.4068	30
094.3143A	94AT	94.3143	27.2239	121.5382	68.1688	189.7070	49
094.2875B	94BT	94.2875	27.6237	121.9112	68.1495	190.0607	24
094.3805D	94DT	94.3805	28.2170	122.5975	68.2167	190.8142	6
101.8311A	101A	101.8311	29.2191	131.0502	73.6019	204.6521	75
101.8531B	101B	101.8531	29.8296	131.6827	73.6179	205.3006	54
111.5911A	111AT	111.5911	31.2564	142.8475	80.6563	223.5038	6
111.4331B	111BT	111.4331	31.8294	143.2625	80.5421	223.8046	9
합계							623

- ※ 상기 면적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은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 상 표기 방식을 청약홈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변경한 바 청약 시 반드시 주택형을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약식표기는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상의 표시 방식임)

나.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10% 범위 (단위 : 세대 / 괄호 : 예비입주자)

구분 / 주택형(약식표기)		84A	84B	84D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국가유공자	6(30)	2(10)	1(5)	9(45)
	장기복무 제대 군인	4(20)	1(5)	0	5(2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20)	1(5)	0	5(25)
	장애인	경기도	1(5)	1(5)	8(40)
		서울특별시	0	0	3(15)
		인천광역시	0	0	2(10)
		소계	11(55)	1(5)	13(65)
	중소기업 근로자	6(30)	1(5)	1(5)	8(40)
	합계	31(155)	6(30)	3(15)	40(200)

- ※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 주택 수의 500% 범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해당기관이 정하고,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 당첨자 선정 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2. 주택공급 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 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6.10.30.(금)	홈페이지(https://pg2lynn.co.kr)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신문공고
건본주택 개관	2026.11.06.(금)	평택 고덕 우미 린 더 프리미어 건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57)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11.09.(월) 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6.11.17.(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
정당계약 기간	2026.11.29.(일) ~ 2026.12.01.(화) 10:00~16:00	평택 고덕 우미 린 더 프리미어 건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57)

- ※ 상기 주요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10:00~14:00)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함)

3.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 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 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 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평택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입주자 저축 구비 여부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신청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경우

4.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동·호배정)에서 제외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1.17.예정)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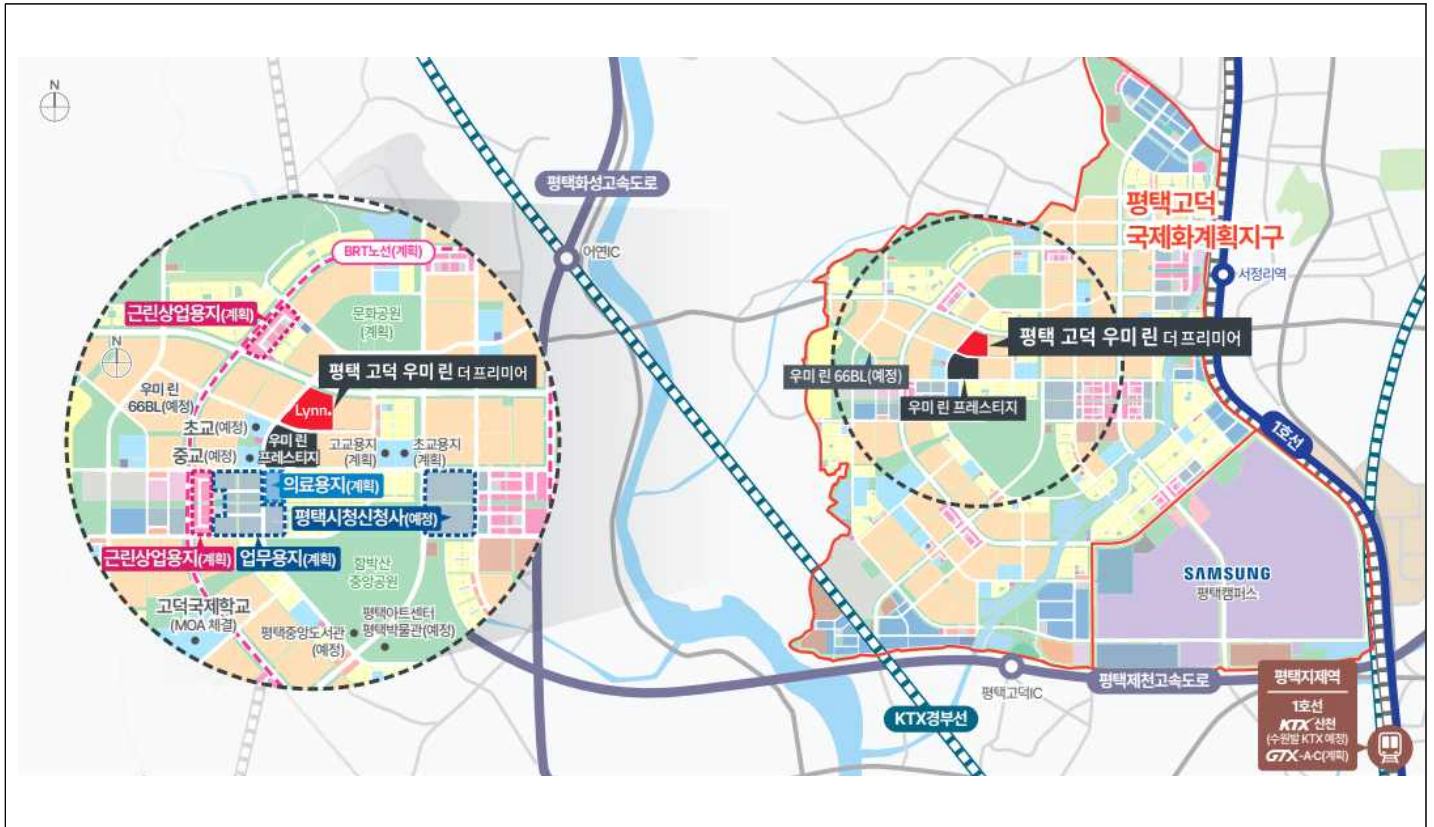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여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간 거주무기간이 적용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거주무기간	3년

※ 참고자료

가. 사업지 위치도



- 상기 위치도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도로, 학교 등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단지 투시도



- 상기 투시도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 건설되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